

2021년도 제361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1. 11. 30.(화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권현영(분과위원장), 김민아, 박정인, 홍지만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1-349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강나래 전문위원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1292건(안전번호 제2021-170134호~171425호)
 - 회의결과: 안전번호 제2021-170134호~170138호는 웹하드를 통해 만화 불법복제물을 제공한 사안으로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전번호 제2021-170139호는 ●●●● 블로그에서 타인의 어문저작물을 권한 없이 전제한 사안으로, 비록 원저작물이 비상업적 저작물로 무료 제공되고 있으나 이것이 타인에게 자유이용을 허락하는 취지가 아닌 점, 타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여 광고 수익을 누리고 있는 점, 해당 블로그에서 동일한 형태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 다수 확인되는 점, 저작인격권의 침해 소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전번호 제2021-170140호는 ▷▷▷ 블로그에서 원저작물의 편집 영상을 게시한 사안으로 공정이용으로 보기 부족하고,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할 수 없으므로 가결함.

안전번호 제2021-170141호는 원저작물의 편집 영상을 게시한 사안으로, 원저작물을 권리자의 허락 없이 이용하여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부정할 수 없으나 게시물 전체의 내용으로 보아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시정권고를 할 경우 게시자의 표현의 자유 등 여타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경고의 시정권고만을 가결함.

안전번호 제2021-170142호는 ▷▷▷ 카페에서 원저작물의 편집 영상을 게시한 사안으로, 전송 중인 편집 영상의 내용 자체는 권리자의 이용허락 하에

원저작물 홍보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인정되나, 심의대상 게시물은 편집 영상을 권한 없이 복제 중인 바, 편집영상 권리자의 복제권 및 전송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게시자에 대한 저작권법 준수를 안내하기 위하여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3,007건은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권헌영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 제361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1-349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권헌영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C 위원: 민원인이 신고한 내용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식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 외 나머지 부분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됨.
- B, E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권헌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저작물명 부분은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

2. 안전상정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강나래 전문위원: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심의대상의 주요 권리자는 ‘♥♥♥♥♥♥’, ‘▶▶▶▶▶’, ‘◆◆◆◆’, ‘◁◁◁◁◁’, ‘■ ■ ■’, ‘★★★★★★★★★★★★’, ‘○○○○○○○○○○’ 등임.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의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해당 없음.

- 권현영 분과위원장: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나래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50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3,016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 강나래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1-170134호~170138호는 민원인이 신고한 사안으로 웹하드에 게시된 만화 불법복제물임.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

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B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은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움.
- C, E 위원: 동의함. 가결 의견임.
- 권헌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170134호~170138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 강나래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1-170139호는 민원인이 신고한 사안으로 ●●●●에 게시된 어문 불법복제물임.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C 위원: 심의대상 블로그에서 심의대상 게시물과 같은 방식으로 불법복제물을 이용하고 있는 사실이 다수 확인됨. 블로그, 커뮤니티 등에서 소위 ‘화제성이 있는 글’을 저작자의 허락 없이 복제하여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심의대상 게시물 및 블로그에서 광고가 다수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영리적 목적을 가지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임.

- 권헌영 분과위원장: 안전번호 제2021-170139호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B, C, E 위원 : 동의함. 가결 의견임.

- 권헌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170139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 강나래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1-170140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요청한 건으로 ▷▷▷ 블로그에 영상 불법복제물이 게시된 사안임.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C 위원: 가결 의견임. 검토보고에 따르면, 방대한 양의 시리즈물 영상 중 15분 분량만을 이용하였다는 점이 공정이용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그러나 우리 법원의 태도에 따르면, 이용분량의 사소성을 공정이용 판단의 요건으로 하는 판례는 없음. 공정이용에 대해 정하고 있는 저작권법 규정을 보면, 오히려 이용분량보다는 저작물 이용의 목적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함. 심의대상 게시물은 보도, 비평 등이 단순 불법복제물 전송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더불어 원저작물의 일부를 잘라 임의로 편집한 결과물에 대해 2차적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동일성유지권 침해의 소지가 매우 크므

로 이 부분 역시 고려되어야 함.

- B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의 영상에 '□□□□□'라는 단어가 지속적으로 노출되는데 어떤 의미인지?
- 강나래 전문위원: 영상이 최초로 게시되었던 '○○○○'이라는 사이트에서 제공했던 기능임.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화면 위에 댓글을 다는 것이며, 심의대상 게시물의 경우 해당 영상이 마음에 든다는 취지로 해당 댓글을 달고 있는 것으로 추측됨.
- B 위원: 보고에 따르면, 영상이 최초로 게시되었던 사이트는 이미 폐쇄되었음. 심의대상 게시물은 그 당시 게시되었던 영상을 다운로드하여 자신의 블로그에 새로 업로드하고 있는 것인지?
- 강나래 전문위원: 그러함. '○○○○'을 통해 타인이 제작하여 전송한 영상물을 다운로드하여 ▷▷▷ 동영상 업로드 기능을 통하여 새로 업로드한 것임.
- A 위원: 부결 의견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해 볼 필요도 있음. 권리자가 권리 구제를 위해 직접 대응하는 것이 적절하거나, 다른 대체적 구제수단이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행정력 발동에 대하여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우리 심의위원회의 기존 입장임. 그러한 심의위원회 입장이 반영된 검토로 사료됨.
- 권현영 분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강나래 전문위원: 만약 가결로 검토하게 되는 경우 김민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전송 중이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홍지만 위원: '○○○○'은 폐쇄되었지만 해당 주소로 접속을 하면 '♀♀♀♀'라는 사이트로 연결됨.
- 강나래 전문위원: 두 사이트의 성격이 달라 별도로 보고하지 아니 하였음.
- C 위원: 편집된 영상저작물에 대한 시장 대체 가능성 판단이 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임. 그러나 그와 같은 영상을 제작함에 있어 권리자의 허락을 받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저작권 침해 사실에 대한 지적이 있어야 한다고 봄. 사안과 같이 저작권 침해 사실이 명백한 경우 좌시하기 어렵다는 입장임.
- 권현영 분과위원장: 가결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보임. 저작물을 권한 없이 이용하고 있는 사실이 명백한 점, 그에 반하여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근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E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의 불법 복제된 저작물 이용은 우리 시정권고를 활용하여 시정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임.
- 권현영 분과위원장: 안전번호 제2021-170140호 가결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B, C, E 위원: 동의함. 가결 의견임.

- 권현영 분과위원장: 안전번호 제2021-163785호는 불법복제물을 이용하고 있는 사실이 명백한 점, 공정이용으로 보기에 부족한 점,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함.

- 강나래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1-170141호~170142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 블로그 및 카페에서 영상저작물의 일부를 전송 중인 사안임.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B 위원: 안전번호 제2021-170142호는 부결로 검토의견을 주셨는데 이유가 무엇인가?

- 권현영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에서 이용 중인 편집 영상이 권리자의 이용허락이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 C 위원: 게시자는 출처 표시만 있으면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오인하고 있는 것을 보임. 저작권 침해 사실에 대하여 지적할 필요가 있음.

- B 위원: 안전번호 제2021-170141호와 제2021-170142호의 검토의견이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

- 강나래 전문위원: 앞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안전번호 제2021-170142호의 경우 편집 영상이 권리자의 이용허락이 있는 점, 출처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음. 다만, 안전번호 제2021-170140호의 의결 취지를 고려하면 안전번호 제2021-170142호에 대하여 가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E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의 내용과 이용형태를 보면, 통상의 불법복제물 전송 사안과 다르다고 볼만한 점이 있음. 경고의 시정권고만으로도 권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권현영 분과위원장: 안전번호 제2021-170141호는 검토의견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고 안전번호 제2021-170142호 역시 저작물의 이용형태를 고려하여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B, C, E 위원 : 동의함. 가결 의견임.

- 권현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170141호~170142호는 게시자에 대한 저작권법 준수를 안내하기 위하여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함.

- 강나래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

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1-170143호~171425호는 모두 불법 복제한 영상물, 음악, 게임, 출판, 만화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전 목록을 제시하면서)일부 안전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전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확인해 주시기 바람.

(영화 '[중점](영화)베놈 2: 렛 데어 비 카니지 (2020)'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1-170666호 '[중점](영화)베놈 2: 렛 데어 비 카니지 (2020)'는 2021. 10. 13. 개봉한 해외 영화로 웹하드에서 162포인트에 판매 중임.

(영화 '[중점](영화)이터널스 (2021)'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1-171135호 영화 '[중점](영화)이터널스 (2021)'은 2021. 1. 3. 개봉한 해외 영화로 웹하드에서 270포인트에 판매 중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위 2건을 포함한 3,007건에 대해 시정 권고 가결 의견임.

- 권현영 분과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전 목록을 확인하시어 안전번호 제2021-170143호~171425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B, C, E 위원: (심의안전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모두 불법 복제한 저작물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을 확인하였고 가결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권헌영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170143호~171425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안전번호 제2021-170134호~170140호는 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1-170141호, 제2021-170142호는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고 안전번호 제2021-170143호~171425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4. 폐회 선언

- 권헌영 분과위원장이 제361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0년 제361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 12. 21.

분과위원장 권헌영

위원 김민아

위원 박정인

위원 홍지만